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당뇨병 종류 세분화 및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67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당뇨병 종류 세분화 및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2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06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8. 22.
- (3) 회 부 일 : 2024. 8.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응급처치 제공 등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를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외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당뇨병 종류 세분화 및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 중 당뇨병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의 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당뇨병 <u><신설></u> <u><신설></u> <u><신설></u> 바. (생략) 2.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1) 제1형당뇨병 2) 제2형당뇨병 3) 기타 당뇨병 바.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u>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을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종류로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규정하고 있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 나. 심장정지
 -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 라. 고혈압
 - 마. 당뇨병
 - 바. 이상지질혈증
 - 사. 삭제<2022.6.10.>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

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으로, 1형, 2형, 임신성, 기타 당뇨병으로 구분되고,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망막병증, 신경병증, 신장병증,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병증의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함.

□ 이중 제1형당뇨병의 경우 우리나라 당뇨병의 2% 미만을 차지하며 사춘기나 유년기에 주로 발생하지만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위해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며,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당뇨병 케톤산증¹⁾을 동반한 급성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수적인 질환임.

□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규정에 당뇨병을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각 유형별 당뇨병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제1형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1)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급성 대사성 합병증.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에 당보다 지방을 사용함으로써 혈류 속에 산대사물의 지나친 축적, 수분과 당의 손실로 발생하는 질환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ntcnInfo/mediaRecsroom/wordDicary/wordDicaryView.do>)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등에서도 제1형 당뇨병자인 영유아나 학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u>제1형 당뇨병을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u> 8. (생략)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u>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u>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또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연구·치료·관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심뇌혈관질환 연구·조사통계·예방 등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것이므

로 특정 질환을 세분화하여 추가하는 것은 다른 질환과의 관계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이라는 측면에서 당뇨병만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과 같이 이 법의 당뇨병 정의를 세분화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과 타 질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에 대한 근거법으로 이 법을 통해 당뇨병만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또한, 심뇌혈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등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인력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뇌졸중학회)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나, 의학적 관점에서 심뇌혈관질환과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므로, 개정안처럼 심뇌혈관질환관리법에 포함하면 법 자체의 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있어 당뇨병은 만성질환관리법 등 다른 법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광주광역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등 다양한 질환이 있는데 당뇨병에 대해서만 1형, 2형, 기타 등으로 구분할 경우 고혈압 등 타 선행질환과의 역차별 및 포괄적 당뇨병 관리 범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